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90
----------	-------

발의연월일 : 2026. 3. 16.

발 의 자 : 부승찬 · 허영 · 김한규
백혜련 · 박선원 · 윤준병
진선미 · 채현일 · 황명선
권칠승 · 김영환 · 김남근
안태준 · 안도걸 · 소병훈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를 기준으로 순직자의 유형을 I·II·III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의무복무기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순직 I형은 그 업무의 성격과 보상 수준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인정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고, 순직 II·III형은 ‘직무나 활동의 직접적인 관련성’ 기준이 모호하여 분쟁이 반복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2023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순직 II·III형을 통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아울러 의무복무기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군 복무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일괄적으로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순직을 2개 유형으로 재정비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있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 I 형으로, 그 외의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순직 II 형으로 분류함으로써 순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이유로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제1항 및 제2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위법행위”로 한다.

가. 순직 I 형: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있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나. 순직 II 형: 직무수행, 교육훈련 등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중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질병 포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사자등의 구분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54조의3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제54조의4에 따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중이거나 심사 예정인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 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 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 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 다)로 구분한다.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순직자	2. -----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 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가. 순직Ⅰ형: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있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질병 포함)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 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질병 포함)	나. 순직Ⅱ형: 직무수행, 교육 훈련 등 공무로 인하여 사 망한 사람 중 가목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사람(질병 포함)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 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삭 제>

<u>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u> <u>(질병 포함)</u> 3. ~ 6. (생 략) ②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u>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u> ③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 ----- -----. <u>위법 행위</u>----- ----- ----- -----. ③ (현행과 같음)
---	---